

외교부 운전서기보 (운전직 9급)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운전서기보(운전직 9급, 2명)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1년 4월 5일
외교부장관

1.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채용예정직위	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운전서기보 (2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관용차량의 운행, 유지·관리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행정업무 지원 등	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실 (서울 종로구)

2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공무원임용규칙,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

3. 응시자격요건

【 공통요건 : 아래 ①~⑤ 전부 충족 필요 】

※ 판단기준일 :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(2021.5.7.)

-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※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- ②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
- ③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※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도 가능
- 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(상세 아래) 및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《결격사유 (국가공무원법 제33조)》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⑤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

- ※ 국내 자격증만 해당
- ※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(21.5.7)에 유효한 자격증만 해당
- ※ 면허정지증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.

【 우대요건 :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】

- ※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, 공통요건의 조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
- ※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, 우대요건의 판단기준일인 원서접수 마감일(21.4.16)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필요
- ※ 우대요건의 ①~⑤는 편의상 붙인 번호로, 우선순위 등과는 무관

(a)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운행 경력(최대 5년까지 경력별 차등 인정)

-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,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승객 대상 승용·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(화물차 등 승객 대상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력은 불인정)
-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재직(경력)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운행 차종, 승차인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 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*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
 - * 폐업회사의 경우,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,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재직(경력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(20.10.6 이후 발행분)
-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하며, 비상근 경력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
- 군 경력의 경우,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에 한해 인정
-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 감안, 최근 (12.1.1 이후)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

(b)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

-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또는 민원24 발급)상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근무경력 우대점수에서 감점 조치

④ 자동차검사·정비자격증

- 등급별 (기능사·산업기사·기사·기능장) 차등배점
- 자격증 종류 및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4개 인정

⑤ 사무관리·정보처리분야 자격증(아래)

-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 (12.1.1.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
- 자격증 종류 및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2개 인정

⑥ 공인영어성적

- 원서접수마감일(21.4.16)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.
-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1개 인정

	TOEFL			TOEIC	FLEX	TEPS
	PBT	CBT	IBT			
A	475점 이상	160점 이상	50점 이상	560점 이상	485점 이상	260점 이상
B	475점 미만	160점 미만	50점 미만	560점 미만	485점 미만	260점 미만

4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/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심사*를 통해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
* 심사요소 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직무연관성, 우대요건 등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, 성실성,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조제3항의 5개 평정요소*를 상·중·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**
 - *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**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/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

5. 시험 일정

모집공고	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합격자 발표	면접심사	최종합격자 발표
21.4.5	21.4.14~16	21.4.30	21.5.7	21.5.17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·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- ※ 서류전형 합격자의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,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해당 응시자에 개별통지 예정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해당,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,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

6. 응시원서 접수

- 응시원서 : 아래 사이트에 접속,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 - 외교부 홈페이지 : www.mofa.go.kr
 -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 : www.gojobs.go.kr

- 접수기간 : 21.4.14(수)~16(금) ※ 4.16(금) 우체국에 접수한 응시원서까지 접수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접수 ※ 택배·퀵서비스는 접수 불가
 -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없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진행
 -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, 분할접수 또는 중복접수 불가
 -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
- 접수처 : (03172)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, 외교부 인사운영팀
※ 응시원서 겉봉에 '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증' 기재

7. 제출 서류 ※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

가. 공통사항 (필수 제출)

① (필수) 응시원서 (별지1호)

※ 응시수수료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부착(우표 형태) 또는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 발급(행정수수료용) 시에는 제출 서류 맨 뒤에 첨부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,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를 제출 서류 맨 뒤에 첨부

② (필수) 이력서 (별지2호)

※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은 이력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, 이력서에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.

③ (필수) 자기소개서 (별지3호)

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④ (필수) 직무수행계획서 (별지4호)

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⑤ (필수) 운전경력증명서

※ 반드시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(정부)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

※ 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 교통사고 : 반드시 '전체기간' 으로 범위 설정

※ 공고일 이전 발행분,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

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별지5호)

※ ①~⑤항목에 모두 동의여부 표시 후 하단의 날짜, 성명, 자필서명

⑦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(별지6호) ※ 하단의 날짜, 성명, 자필서명

⑧ 주민등록초본 ※ 남성의 경우,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

나. 개별사항 (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)

○ 경력(재직)증명서

- 경력이란,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,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승객 대상 승용·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(화물차 등 승객 대상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력은 불인정)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20.10.6 이후) 발행분에 한하며, 6개월 이전 발행분은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
- 경력(재직)증명서를 통해 ①근무기간, ②업체명, ③직위, ④담당업무, ⑤운행차량의 종류 및 인승, ⑥근무형태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(아래 사례 참조),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①~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[별지7호]를 사용하여 증빙 필요
(예) ①17.1.21~18.1.20 ②(주)00 ③사원 ④통근버스 운행 ⑤승합(대형), 45인승 ⑥전일
-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 이므로,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
-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
 - 폐업회사의 경우,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되,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증명서에 발급 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되도록 발급(미포함시 하단에 수기로 별도 기재)

- 자격증 : 아래 해당사항 있을 경우, 반드시 사본 제출
 - (자동차검사·정비 분야) 기능사, 산업기사, 기사, 기능장
 - (사무관리·정보처리 분야)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·2급, 워드프로세서 (12.1.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
- 공인영어성적 : 아래 해당사항 있을 경우, 반드시 사본 제출
 - 21.4.16까지 유효한 영어 TOEFL, TOEIC, FLEX, TEPS 성적표

8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미비,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고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5조의2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(경력증명서 등)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-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,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보수 수준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.
※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,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, 직급별 보수액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3 참조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해당,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,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·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 : 경력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※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>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go.kr) - 참여민원 –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– **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**

-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- 채용 절차 : 외교부 인사운영팀 (02-2100-7146)
 - 업무 관련 :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실 (02-2100-7327)

붙임 : 직무기술서 및 별지1~7호

불임	직무기술서
----	--------------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용차량의 운행, 유지 · 관리 · 기타 관용차량에 관련된 지원 업무 · 행정업무 지원 등
------	--

필요역량	<p>(공통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 ·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 ·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</p> <p>(직급별역량) 상황인식 · 판단력, 기획력, 팀워크지향, 의사소통 능력, 조정능력</p>
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· 차량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
------	--

응시자격요건	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우대요건	<p>ⓐ 제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[별표1]에 의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운행경력 (최대 5년까지 경력별 차등 배점)</p> <p>ⓑ 교통사고 유무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 (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확인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점수에서 감점 조치)</p> <p>ⓒ 자동차검사 · 정비자격증 소지자 (종류,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4개 인정)</p> <p>ⓓ 사무관리 ·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(종류, 등급에 관계없이 최대 2개 인정) - (인정자격증)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 · 2급, 워드프로세서 (12.1.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</p> <p>ⓔ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(21.4.16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,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1개 인정)</p>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3">TOEFL</th> <th rowspan="2">TOEIC</th> <th rowspan="2">FLEX</th> <th rowspan="2">TEPS</th> </tr> <tr> <th>PBT</th> <th>CBT</th> <th>IBT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</td> <td>475점 이상</td> <td>160점 이상</td> <td>50점 이상</td> <td>560점 이상</td> <td>485점 이상</td> <td>260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>B</td> <td>475점 미만</td> <td>160점 미만</td> <td>50점 미만</td> <td>560점 미만</td> <td>485점 미만</td> <td>260점 미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TOEFL			TOEIC	FLEX	TEPS	PBT	CBT	IBT	A	475점 이상	160점 이상	50점 이상	560점 이상	485점 이상	260점 이상	B	475점 미만	160점 미만	50점 미만	560점 미만	485점 미만	260점 미만
	TOEFL			TOEIC	FLEX				TEPS																
	PBT	CBT	IBT																						
A	475점 이상	160점 이상	50점 이상	560점 이상	485점 이상	260점 이상																			
B	475점 미만	160점 미만	50점 미만	560점 미만	485점 미만	260점 미만																			